

「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」
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,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, 「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(행정안전부 제2024-44호)」 제5조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「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」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단 양 군 수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가. 용역개요

용역명	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
용역기간	착수일로부터 36개월
용역내용	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 ※ 과업지시서 참조
용역금액	금 4,80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나. 시행기관 : 충청북도 단양군

다. 장기계속계약이며, 1차분 사업비는 1,000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라. 입찰예정시기 :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

※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마. 입찰 및 계약방법 :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심사) 및 적격심사 대상

2.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,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.

- 1)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**건설기술용역업(종합)** 또는 **건설기술용역업(설계·사업관리-일반)** 또는 **건설기술용역업(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-일반)**으로 등록한 업체
- 2)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**건설분야(수자원개발, 토질·지질, 구조)**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
- 3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**방재관리 대책대행자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)**로 등록을 필한 업체
- 4) **측량조사부문**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규정에 의거 **공공측량업** 또는 **측지측량업**을 등록하고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**중소기업자** 중,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<중·소기업 확인서>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**[세부 품명 : 측량(세부품명번호 : 8115160401)]를 소지한 업체

3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

- 가. 공동도급 시 **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**, 그 외 분야는 **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**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- 나. 측량분야는 **충청북도 소재(본사) 업체**의 참여를 인정하며,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[과업분담비율]

구분	합 계	엔지니어링	측량
공종별 구성비율	100.00%	80.78%	19.22%

※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- 예시1 : A, B, C, D,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
 - 공동이행 : A + B + C, 분담이행 : D, E ⇒ 참여 가능
- 예시2 : A, B, C,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
 - 공동이행 : A + B + C, 분담이행 : A, D ⇒ 참여 불가능

※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
※ 지역업체 참여도(적격심사)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.

※ 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% 이상을 권장합니다.

다.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%이상으로 하며,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.

라.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,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.

4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

가. 작성안내서 교부: 조달청 나라장터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(별도교부 없음)

나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

- 1) 제 출 일 : 2026년 7월 30일(목) 13:00~18:00 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
- 2) 제출장소 :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(안전건설과 하천팀)
- 3) 제출서류(양면좌철)
 -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.
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) /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
-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(합본 2부, 별권 6부(업체명 기재 1부, 업체명 미기재 5부))

※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* 1개 제출

* 사업수행능력평가서(기술인, 회사실적 등 포함), 업무중복도(hwp 파일) 포함

4) 제출양식 :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

다. 제출방법 : 직접방문 제출[우편, 팩스, 전자우편(e-mail),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]

※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.

라.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

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사용인감계(인감지참), (법인)인감증명서,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, 업체 면허 사본 각 1부(공동 도급업체 포함)

※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
5.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, 「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-44호)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.

나.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**평가결과 87.50점 이상**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,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.

다.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

라. 예정가격 이하 **낙찰하한율(79.995%)**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026-373호)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 1> [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(P.Q)를 하는 기술용역]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.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**종합평점이 92점 이상**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마. 해당용역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「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」는 제외하며, 배점 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.

6. 기타사항

가.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,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나.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,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다.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
마.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(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)는 그 항목에 대하여 “0점” 처리 합니다.

바. 투입예정기술인(참여기술인)의 해당분야 자격, 경력,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,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*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,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)

사.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아.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·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,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.

자.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평가항목 중 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”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차.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 안전건설과 하천팀(☎043-420-2792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